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310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905,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0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8. 11. 22.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0,413,910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B의 모친인 망 C는 2018. 10. 1.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피고, B, E, F이 있다.

다. 망 C의 상속인들은 2018. 11. 22.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B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마.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09. 10. 28.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08,470,590원을 변제하여 말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2.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8,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지분(1/5)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B는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가액배상의 한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300,413,91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해행위 무렵 및 현재 시가가 208,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8,470,59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B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19,905,880원 $[(208,000,000\text{원}-108,470,590\text{원})\times 1/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고,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B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이다.

결국 위 각 금액 중 최소 금액인 19,905,880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와 E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6,759,350원, 약제비 1,403,18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이 병원비, 약제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E이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망인의 소극재산인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상속재산에서 망인의 장례비 17,861,700원, 묘지구입비 9,080,000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의금을 초과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 묘지구입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상속재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함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5,149,720원 중 B의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취득비용인 1,029,94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수익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이 19,905,88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상속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9,90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9.89㎡. 끝.